

2.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를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세부전문의를 정의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실시하는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의 진단, 치료, 교육 및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의사와의 협동 진료에서도 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를 전공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임상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소아심장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세부 전문의 자격이 국가기관이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을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제 4 조] 세부 분야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소아청소년 심장학 내에 아래와 같이 2 개의 세부 분야를 인정한다.

1. 소아청소년 심장 내과학 분야
2. 소아청소년 심장 외과학 분야

[제 5 조] 조직

1.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를 수련, 자격시험, 자격의 관리 및 갱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산하에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설치한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3. 관리위원회는 세부 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중 매년 필수 교육 이수를 포함하여 10 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필수 교육은 필수 학회 중 한곳의 참석을 말하며 필수 학회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주관 춘계학술대회, 대한 심장 학회 주관 추계학술대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 주관 업데이트 심포지엄을 말한다.
2. 평점 취득을 인정하는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는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모든 인정 학회와 관련 학회는 5년 주기로 검토한다.
3.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

1.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전임의(fellow)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전임의 수련 기간은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
3. 전임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수련 기록의 유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수련 병원

1. 소아청소년 심장학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또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 병원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장 전문 병원 중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지도전문의가 세부 분야별(2)로 각각 최소 한 명씩 있어야 하며, 충분한 숫자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와 적절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심장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 수련병원으로 추천하여 학회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3. 수련 병원의 지정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세부 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

1. 다음 제 1 호 및 2 호의 요건 또는 제 1 호 및 3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심장학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 (1)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을 신청할 당시에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정회원 (평생회원)으로서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2)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전임의 2 년차를 마쳤거나 전임의 1 년차를 마치고 소아청소년 심장학 분야에서 1 년간의 실무를 인정받은 자
- (3) 해외에서 전임의 수련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자.

2. 자격 신청 및 방법

- (1) 자격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심장학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2) 자격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

1.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은 2 년에 한번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년도 이사회의 결의로 연속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할 수 있으나 3 년 연속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2.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및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세부 전문의 자격의 유효기간

1. 세부 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2. 매 5 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3. 자격 갱신을 위하여 필수 교육을 포함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갱신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정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12 조] 부칙

1. 본 규정과 해당 규칙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하거나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하며 추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7조 제 2항의 전임의 수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1차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2차 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3차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6. 4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7. 5차 개정된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